

부속서 2

부속서 8-가
적용범위

부속서 8-가
적용범위

제1절
중앙정부기관

사. 과테말라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3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260,000 SDR

서비스

제4절에 명시

기준가: 13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260,000 SDR

건설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5,00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6,000,000 SDR

기관 목록

1.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2. 문화체육부 (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s)
3. 공공재정부 (Ministerio de Finanzas Públicas)

4. 환경천연자원부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5. 대통령 총괄 비서실 (Secretaría General de la Presidencia)
6. 대통령 집행조정비서실 (Secretaría de Coordinación Ejecutiva de la Presidencia)
7. 대통령 기획 비서실 (Secretaría de Planificación y Programación de la Presidencia)
8. 대통령 전략분석 비서실 (Secretaría de Análisis Estratégico de la Presidencia)
9. 대통령 평화 비서실 (Secretaría de la Paz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10. 대통령 행정안전 비서실 (Secretaría de Asuntos Administrativos y de Seguridad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11. 대통령 농업 비서실 (Secretaría de Asuntos Agrarios de la Presidencia)
12. 대통령 여성 비서실 (Secretaría Presidencial de la Mujer)
13. 대통령 사회복지 비서실 (Secretaría de Bienestar Social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14. 대통령 사회소통 비서실 (Secretaría de Comunicación Social de la Presidencia)
15. 마약소비중독불법거래방지 집행 비서실 (Secretaría Ejecutiva de la Comisión contra el Consumo, Adicción y Tráfico Ilícito de Drogas)
16. 대통령 영부인 복지사업 비서실 (Secretaría de Obras Sociales de la Esposa d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17. 인권집행정책조정 대통령 위원회 (Comisión Presidencial Coordinadora de la Política del Ejecutivo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18. 국가개혁·탈중앙화·시민참여 대통령 위원회 (Comisión Presidencial para la reforma del Estado, la Descentralización y la Participación Ciudadana)
19. 국립과학기술위원회 (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
20. 국가재난감소조정부 (Coordinadora Nacional para la Reducción de Desastres)
21. 국가공무원위원회 (Junta Nacional del Servicio Civil)
22. 국가공무원국 (Oficina Nacional del Servicio Civil)

23. 과테말라원주민개발기금(Fondo de Desarrollo Indígena Guatemalteco)
24. 국가과학기술기금(Fond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
25. 국가평화기금(Fondo Nacional para la Paz)
26. 국가청년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Juventud)

제1절에 대한 주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8장은 이 양허포에 열거된 기관에 종속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그 기관이 별도의 법인격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절
지방정부기관

바. 과테말라 양허표

1.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355,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490,000 SDR

서비스

제4절에 명시

기준가: 355,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490,000 SDR

건설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5,00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16,000,000 SDR

2. 제8장은 이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에만 적용된다.

기관 목록

과테말라(Guatemala)주 지방정부

1. 프라이하네스(Fraijanes)
2. 산 후안 사카테페케스(San Juan Sacatepéquez)
3. 산 페드로 사카테페케스(San Pedro Sacatepéquez)
4. 산 라이문도(San Raymundo)
5. 산 페드로 아얌푸크(San Pedro Ayampuc)

6. 치나우틀라(Chinautla)
7. 산타 카타리나 피놀라(Santa Catarina Pinula)
8. 과테말라(Guatemala)
9. 믹스코(Mixco)
10. 비야 누에바(Villa Nueva)

제8장은 과테말라(Guatemala)주의 기관들에 의한 건설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주 지방정부

11.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12. 코아테페케(Coatepeque)

에스퀸틀라(Escuintla)주 지방정부

13. 치키물리야(Chiquimulilla)
14. 산타 루시아 코추말구아파(Santa Lucía Cotzumalguapa)
15. 에스퀸틀라(Escuintla)
16. 푸에르토 데 산 호세(Puerto de San José)

사카파(Zacapa)주 지방정부

17. 사카파(Zacapa)
18. 리오 온도(Río Hondo)
19. 테쿨루탄(Teculután)

치키물라(Chiquimula)주 지방정부

20. 치키물라(Chiquimula)

엘 키체(El Quiché)주 지방정부

21. 산타 크루스 델 키체(Santa Cruz del Quiché)

엘 페텐(El Petén)주 지방정부

22. 플로레스(Flores)

23. 산 베니토 (San Benito)

엘 프로그레소 (El Progreso) 주 지방정부

24. 과스타토야 (Guastatoya)

이사발 (Izabal) 주 지방정부

25. 푸에르토 바리오스 (Puerto Barrios)

우에우에테낭고 (Huehuetenango) 주 지방정부

26. 우에우에테낭고 (Huehuetenango)

할라파 (Jalapa) 주 지방정부

27. 할라파 (Jalapa)

후티아파 (Jutiapa) 주 지방정부

28. 후티아파 (Jutiapa)

알타 베라파스 (Alta Verapaz) 주 지방정부

29. 코반 (Cobán)

바하 베라파스 (Baja Verapaz) 주 지방정부

30. 살라마 (Salamá)

제3절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

사. 과테말라 양허표

1.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20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274,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550,000 SDR

서비스

제4절에 명시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20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274,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550,000 SDR

건설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목록 가와 나의 기관: 15,000,000 SDR, 또는 발효일 후 3년간은 16,000,000 SDR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8장은 이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에만 적용된다.

기관 목록

목록 가

1. 과테말라마야어학회(Academia de Lenguas Mayas de Guatemala)
2. 과테말라자주스포츠연맹(Confederación Deportiva Autónoma de Guatemala)
3. 토지소유권개발강화위원회(Comisión Institucional para el Desarrollo y Fortalecimiento de la Propiedad de la Tierra)
4. 과테말라올림픽위원회(Comité Olímpico Guatemalteco)
5. 전시상임위원회(Comité Permanente de Exposiciones)
6. 과테말라안티과보호 국립위원회(Consejo Nacional para la Protección de la Antigua Guatemala)
7. 국립중앙농업학교(Escuela Nacional Central de Agricultura)
8. 농업과학기술청(Instituto de Ciencia y Tecnología Agrícolas)
9. 지방개발청(Instituto de Fomento Municipal)
10. 과테말라관광청(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11. 공공행정청(Instituto Nacional de Administración Pública)
12. 국가산림청(Instituto Nacional de Bosques)
13. 국가농업진흥청(Instituto Nacional de Comercialización Agrícola)
14. 국가협동조합청(Instituto Nacional de Cooperativas)
15. 국가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16. 직업교육훈련청(Instituto Técnico de Capacitación y Productividad)
17. 조세행정감독원(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18. 토지기금(Fondo de Tierras)

목록 나

1. 과테말라통신공사(Empresa Guatemalteca de Telecomunicaciones)

제5절 서비스

사. 과테말라 양허표

제8장은 이 절에 기재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과테말라 유보목록에 기재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제8장은 유엔 중앙품목분류 1.0(CPC 버전 1.0)에 분류된 다음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공공서비스

대분류 69	전기공급서비스, 본관을 통한 가스 및 수도공급서비스
대분류 91	공공행정 및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 밖의 서비스, 의무적인 사회보장서비스
대분류 92	교육서비스(공교육)
대분류 93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대분류 9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서비스

나. 개인전문직서비스(제8장은 계약체결이 그 장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특정 기간 동안의 계약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절 건설서비스

사. 과테말라 양허표

제8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건설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과테말라 유보목록의 적용을 받는다.

제7절 일반 주해

사. 과테말라 양허표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제8장에 대한 예외 없이 적용된다.

1. 제8장은 과테말라 공공 기관이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과테말라 조달 기관이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8장은 과테말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제되지 않은 광물의 공공사업상 건설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8장은 과테말라 공화국 국회 법령 제57-92호 국가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No. 57-92 del Congreso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제44조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계약이 특정 법적 절차에 관하여 긴급하게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체결되거나 화해 및 중재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은 제 8.11조에 기재된 경우 외에도 제한입찰 절차에 따라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5. 제8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의한 이례적인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정관리 중인 사업 자산 처분과 같이 매우 단기적인 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8.4조(일반원칙) 제6항(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과테말라는 당사국들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7. 과테말라는 매 2년마다 이 부속서의 기준가를 자국통화로 환산한다. 각 조정은

이 의정서의 발효 후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1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 환산은 미국 달러로 표시한 자국 통화의 일일 가치 평균을 이용한 과테말라 중앙은행의 공식 환산율에 따른다. 그러한 절차는 그 조정이 발효될 연도 이전의 9월 30일에 종료되는 2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